

대구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3086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30860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0가단1423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심우연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안은혜, 조금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변론 종결2024. 6. 26.

판결 선고2024. 7. 24.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0가단142346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B와 C 사이에 2018. 5. 11. 체결된 매매계약, ② C와 피고 사이에 2019. 12. 6. 체결된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중복 E) 사건의 2021. 11. 25.자 별지2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배당금 66,675,309원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3, 4행의 "구상금채권을"을 "구상금채권 또는 2017. 7. 10.자 채권양도에 의한 양수금채권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11행부터 6행의 "나. 또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담보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C의 무자력 여부를 다투면서, 피고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2행의 "지급한 점"을 "지급하였고, C는 피고에게 2020. 1. 7. 1,064,029원, 2020. 2. 10. 1,000,000원, 2020. 4. 7. 1,000,000원, 2020. 5. 27. 2,044,974원, 2020. 7. 30. 1,000,000원, 2020. 8. 31. 1,000,000원, 2020. 10. 14. 1,100,000원 상당의 이자를 각 지급하였던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9행의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 12. 6.은 이미 진흥원과의 임대차계약이 2019. 7. 31. 자로 종료되고 원고가 2019. 11. 18. 진흥원에 이 사건 보증약정의 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실인 상태여서, 원고 주장과 같이 C의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안재

판사이재덕

판사박만호

별지

1) 원고는 제1심에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장 및 2021. 4.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C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2022. 7.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배당금지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를 판단 대상으로 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원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취지에 원상회복 방법으로 위 변경된 청구취지 이전에 구하였던 바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므로, 2022. 7.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배당금지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